

1. 개정이유

전자여행허가제(K-ETA)의 수수료 인하를 통하여 전자여행허가제(K-ETA)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(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)의 “사전 여행허가서 발급 수수료”를 현행 1만원에서 5천원으로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법무부령 제 호
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1호의2 중 “1만원”을 “5천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2조(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) 외국인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72조(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1의2. 사전여행허가서 발급: <u>1만 원</u>	1의2. ----- <u>5천 원</u>
2. ~ 15. (생 략)	2. ~ 15. (현행과 같음)